#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4-학인-00001 기숙사 사감교사의 폭언 및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등

신 청 인 ○○○(○○○○○고등학교 3학년 5반) (피 해 자)

피 신 청 인 ○○○(○○○○○고등학교 교사, 기숙사 사감)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피신청인의 인격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 조 치할 것을 권고한다.

# 2. ○○○○○고등학교장에게,

가.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생이 기숙사 퇴소 및 벌점 부여 등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4. 11. 10.

나. 신 청 인(피해자) : ○○○(○○○○○고등학교 3학년 5반)

다. 피신청인: ○○○(○○○○○고등학교 교사, 기숙사 사감)

라. 구제신청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였고, 특정학생들에게만 연습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기숙사 규정 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기 숙사 퇴사를 종용하였다.

# 2.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 위 신청요지와 같다.

#### 나. 피신청인

학생들을 체벌한 사실이 없는데 체벌을 했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새끼'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를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나, 친근한 표현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등학교에서는 16:10에 정규교과수업이 끝나고 이후 20:40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 시간 이후학교에서 실습실을 문단속하고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14. 5.경 본인이 기숙사 사감을 맡으면서 남자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기숙사 점호(21:00)가 끝난 이후 자율실기연습을 할 수 있게 하여 남자기숙사생을 위하여 연습시간을 늘려준사실은 있는데, 이는 입시를 앞둔 남자 기숙사생을 위해 사감의 재량으로 실습실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상의 벌점 규정보다 약하게 적용하거나, 청소를 시킴으로서 상점으로 벌점을 대체하는 등 기숙사생을 위해 운영관리규정을 조정한 바는 있지만, 벌점을 일부러 올리거나 조정한 사실은 없다.

다. 남자 기숙사 학생들의 설문 결과(현원 50명 중 26명 답변)

피신청인이 체벌을 하지않았다는 답변(26명), 피신청인이 "야 이 새끼야", "미친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답변(5명)이 있었다.

#### 4. 인정사실

신청인의 구제신청서, 피신청인의 확인서, 남자 기숙사생들의 주장 및 관련서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기숙사생을 지도하면서 평소에 "새끼"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말하였다.

나. ○○○○○○□등학교에서는 16:10에 정규교과수업시간이 끝나고 이후 20:40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 5.경부터 남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21:00 이후 23:00까지, 남자기숙사 사감교사의 재량으로 연습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6. 10.(화) ~ 6. 22.(일) 기간 동안 총 4장의 반성 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2014. 6. 10.(화) 취침시간(20시30분)이후인 23:00~23:30 동안 기숙사 호실에서 아령으로 운동을 하였음.
- ② 2014. 6. 16.(월) 사감교사에게 거짓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전화를 하고 외박신청을 하였는데, 사감교사가 이를 알고 기숙사에 복귀하라 고 지시하여 22:30경 기숙사에 들어와서, 기숙사 퇴소 문제로 사감교 사와 실갱이를 하다가 2:00경 기숙사에서 취침을 하였음.
- ③ 2014. 6. 18.(수) 20:19경 신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사감교사에게 적발되었음.

④ 2014. 6. 22.(일) 22:30~22:50 ○○○, ○○○, ○○○, 신청인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었음.

라. 신청인은 2014. 6. 30.(월) 보호자 〇〇〇과 함께 퇴사희망원을 제출하여 자진퇴사 하였다.

#### 5. 판단

가. 폭언 및 체벌에 따른 인권 침해 관련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등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벌은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학생의 인격적 존재로서의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여 민주시민 교육의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지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평소 학생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면 오른손 바닥으로 학생들의 뒤통수와 뒷목을 때리고, "놈", "새끼"등과 같은 폭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직접적인 체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

고, 남자기숙사생 설문내용에서도 피신청인이 체벌을 하였다는 주장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일상적으로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새끼"라 함은, "① 낳은 지 얼마 안되는 어린 짐승. ②'자식(子息)'을 얕잡아 이르는 말. ③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사용한 것은 ③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욕설은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때로는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체벌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한 것으로, 언어적 폭력(욕설)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 나. 특정 학생들만 연습실을 사용하게 한 차별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 또는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등학교 실습 연습실은 개인 연습실 형태(국악, 성악, 악기 등을 개인별로 연주 연습하는 연습실로 방음이 되어 있음)로되어 있어, 정규교과수업에 있어서도 지도교사의 감독 하에 실습을하고 있는데, 정규교과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이후, 남자기숙사를 관리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남자기숙사생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 기숙사 점호시간인 21:00 이후 실습실을 개방하여 준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차별이라 함은 특정집단에 비해 특정집단을 합리적인이유 없이 우대·분리·배제 등을 하여야 하므로 특정집단들의 상황에 대해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하는데, 모든 학생들(일반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이후 남자기숙사생이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것이어서 이용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비교할 의미가 없고, 남자기숙사생만 실습실을 이용하게 된 것은 남자기숙사를 관리하는 사감교사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실습실을 개방하여 이익을 준 것으로, 자신의 관리 하에 없는 여자기숙사생들을 배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 기숙사 규정 자의적 운영 및 퇴사 종용 등 관련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다.항의 ①의 경우 '취침시간 이후 소등을 않거나 잡담으로 타 호실 취침을 방해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고등학교 기숙사운영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함) 제30조 제3항에 따라 벌칙4점에 해당하고, ②의 경우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였으므로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벌점 10점에 해당하며, ③과④의 경우 흡연행위로서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벌점 10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관리규정을 운영하여 벌점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2014. 6. 10.(화) ~ 같은 달 22.(일)까지 벌점 34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관리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벌점 25점을 초과하였고, 원래는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강제 퇴사 조치를 받아야 했으나, 같은 달 30.(월) 보호자와 함께 퇴사희망원을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강제퇴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기숙사 사감교사가 기숙사 퇴사를 종용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에게 기숙사 퇴소와 관련한 벌점을 부여할 때에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기숙사 퇴소를 하지 않기 위한 자기관리, 벌점 누적으로 인한 퇴소 시 사전 준비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므

로,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벌점 관리를 투명하고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퇴소 전 학부모 상담(벌점 15점 도달 시 상담)을 기록하고, 퇴소 시 그 사유를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

가. 폭언 및 체벌에 따른 인권 침해 관련

체벌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일상적으로 "새끼"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지도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신분상 처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용해 야할 언어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특정학생들만 연습실을 사용하게 한 차별행위 관련 차별행위(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다. 기숙사 규정 자의적 운영 및 퇴사 종용 등 관련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 다만, 학생이 기숙사 퇴소 및 벌점 부여 등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 1. 16.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전 준 형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강 은 옥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임 송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태리명희 (서명)

# [별지: 관련 규정]

#### 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 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바. 「국가인권위원희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하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 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 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 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 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 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